

학교폭력 관련 업무처리 유의사항 안내

[경기도교육청 생활교육과]

□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 작성·관리

○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에서 학교폭력에 따른 가해학생 조치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진 경우

☞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 삭제

※ 대법원 2025.9.9.자 2025무565 결정 참고

○ 집행정지 기간이 만료된 경우이거나, 본안 행정소송(행정심판)에서 당초 조치가 적법한 것으로 최종 확정된 경우

☞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다시 기재

○ 집행정지 되었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본안 행정소송(행정심판)을 통해 적법한 것으로 최종 확정되었으나 이미 상급학교에 진학한 경우

☞ 교육부 차원에서 후속 조치를 검토 중, 추후 안내 예정

□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 관련

○ 법제처의 법적 자문 결과 「학교폭력예방법」 제14조 제3항에 따라 교감, 전문상담교사, 보건교사, 책임교사, 학부모는 전담기구의 필수 구성원임.

☞ 「학교폭력예방법」 제14조 제3항에서 구성원을 규정한 것은 전담기구의 역할을 고려하여 분야별 필요 인력을 정한 것임.

○ 학교마다 전문상담교사 등이 배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 불가피하게
구성원으로 포함되지 못한 사람이 있는 경우, 그 사람과 유사한 전문성을
가진 사람을 구성원으로 포함시켜야 함.

☞ 만일, 불가피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「학교폭력예방법」 제14조 제3
항에서 열거된 필수 전담기구 구성원 중 일부를 제외할 경우에는
법률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지양해야 함.

□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에 대한 제3자 정보 제공 관련

○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가 기재되는 학내 각종 문서는 **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는
비공개 자료임.**

☞ 학교생활기록부를 제외한 가해학생 조치에 관한 일체의 문서는 법령상의
공식적인 문서가 아니며, **해당 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가해학생
조치이력은 개인정보임.**

☞ 더불어 「학교폭력예방법」은 학교폭력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
수행하였던 사람에게 **비밀누설금지의무(제21조)**를 부여하고 있음.

☞ 각 학교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에 관한 문서(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
조건부 기재유보관리대장,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관리대장)가 분실,
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